

농림축산식품부

권 고

제 목 동물위생시험소법 시행에 따른 가축개량 독립기관 신설 필요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경상남도는 전국 가축 사육두수의 8.2%(점유율 전국 6위, 2015.12월 기준)를 차지하고, 도내 농업 총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 광역자치단체로 1996년 9월 조직개편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던 종축장(침단양돈연구소)¹⁹⁶⁾을 가축위생시험소와 통합하여 축산진흥연구소(2개과)로 운영하다가 2008년 7월부터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으로 기관장 직급(4급→5급)을 낮추어 축소 운영해 오고 있다.

축산시험장의 주요 기능은 우량 종축 개량보급 및 실증시험, 친환경 축산 기술 시험연구 및 실용화, 가축유전자원 관리 및 축산생명공학연구, 고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보급 및 핵이식 연구, 침단기술의 현장적용연구 및 양축농가 사양기술 지도 등 축산 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개방화시대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계절 구분없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AI 등 각종 질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종축개량을 위해 독자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행정조직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96) 축산시험장 조직개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①경상남도 종축장 설치('46.4.1), ②종축장을 가축위생시험소와 통합('96.9.19), ③종축장에 침단양돈연구소 설치('01.8.9), ④침단양돈연구소를 축산진흥연구소에 흡수 통합('07.7.1), ⑤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으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험소 업무와 성격이 다른 가축개량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위생시험소법」¹⁹⁷⁾을 제정하여 2016. 6. 23.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의 국가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2013년 1월 전북 남원시에서 경남 함양군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설계, 토지협의 보상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타 지역보다 우수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경상남도는 구 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 대응, 우량 종축 생산보급, 유전자원 보전 등을 위해 새롭게 변화된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축개량 독립기관 신설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감사일 현재 [표]와 같이 “도별 종축개량업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가축위생과 종축개량 업무를 미분리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3개 지역에서만 축산시험장을 5급 기관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표] 도별 종축개량업무 운영 현황

197) 6)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제정(법률 제13357호, 2015.6.22.)

도별	명칭	기관장	운영	조직분리여부	비고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4급	2팀	분리('16.11.1)	정 부 합 동 감 사 ('16.6.24)에서 권고 조치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	4급	담당관	분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	5급	1시험장	통합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4급	2과	분리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5급	1시험장	통합	명칭만 변경('16.7.8)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4급	1연구소	농기원 소속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4급	1과,1실	분리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	5급	1시험장	통합	
제주도	축산진흥원	4급	2과	분리	

* 자료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축산시험장이 축산진흥연구소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량 종축보존 등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중앙기관과의 업무 불일치(축산진흥연구소↔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시험장↔농진청 축산과학원)에 따른 상호 이해충돌로 종축개량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시행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장업무 중심의 독립된 가축개량기관(가칭, 축산기술연구소)이 신설 운영(4급 기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기남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험소에서 가축개량 업무를 분리시켜 독립기관(가칭 축산기술연구소)으로 신설하여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